

10.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7일
- 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10일
- 상정일자 :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3년 7월 21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)

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문화지 발간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대구문화지 발간 담당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2조는 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을 “대구문화예술회관장”에서 “대구광역시”로 변경함.
- 안 제4조는 대구문화편집위원회 위원장은 “관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변경하고, 위원 중 “문화예술정책과장”을 “대구광역시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변경함.
- 안 제7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“문화예술회관 공연 담당주사”에서 “시 업무담당 팀장”으로 변경함.
- 안 제8조는 편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에서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로 변경함.
- 그 밖에 조문 개정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음.

[제2조제1항] “월1회” → “월 1회”

[제3조, 제3조제5호] “각호” → “각 호”, “기타” → “그 밖에”

[제4조제1항] “1인을 포함한 10인이내” → “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

[제5조, 제5조제3호] “각호” → “각 호”, “기타” → “그 밖에”

[제7조제1항] “1인” → “1명”

[제8조제3항] “자문을 받을” → “자문할”

[제10조제3항, 제10조제4항제3호] “범위안” → “범위 안”, “기타” → “그 밖에”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계 행사 소식 및 지역 예술인 활동 등 대구시 문화예술 전반의 주요 동향과 자료를 수록하는 ‘대구문화’의 발간 담당 부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‘대구문화’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현존 잡지 중 최장수 월간지(’85. 12월 창간)로 연간 84,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주요 문화예술 기관·단체, 공공시설 등에 배부하고, 대구시청 홈페이지, SNS를 통해서도 창간호에서 최신호까지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주요 공연·행사와 문화계 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<월간 대구문화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간제작 : 연 12회, 온·오프 동시 발간 * 사업비 216백만원(시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간부수 : 84,000부(매월 7,000부/100면) - 전자책(대구문화예술디지털아카이브), 블로그, SNS 채널 운영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문화계(공연장 40여 개소 / 전시장 100여 개소) 행사 소식 수록 - 예술인 인터뷰 등 향토 문화예술계 전반의 주요 동향 소개와 기록 ○ 배 부 처 : 정기구독자, 시, 구·군 문화공간, 도서관 등
--

- 특히, ‘대구문화’의 발간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, 지역 문화예술 기관·단체간 네트워크 형성,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발판 마련 등 ‘문화도시 대구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시는 ‘대구문화’의 콘텐츠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